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1629
----------	------------

제안연월일 : 2024년 3월 5일

제안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 1. 수정이유

- 지원대상을 ‘지식정보취약계층’에서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소외인’으로 수정하여 용어의 뜻을 명확하게 하고 법률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 및 분쟁을 방지하고자 함.

## 2. 수정의 주요내용

가. 독서소외인을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나.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문화 활동 기회의 대상을 ‘지식 정보취약계층’에서 ‘독서소외인’으로 변경함(안 제37조의2).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독서소외인”이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진흥) 시장은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3.(생략)</p> <p>4. <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제2조(정의) ----- ----- -----.</p> <p>1.3.(현행과 같음)</p> <p>4. <u>&lt;신설&gt;</u></p> <p><u>제37조의2(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문화진흥) 시장은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u></p> <p>1. <u>지식정보취약계층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자료와 시설의 확충 및 제공</u></p> <p>2. <u>지식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u></p> <p>3. <u>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 관련 실태조사</u></p> <p>4. <u>그 밖에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조치</u></p>	<p>제2조(정의) ----- ----- -----.</p> <p>1.3.(개정안과 같음)</p> <p>4. <u>“독서소외인”이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u></p> <p><u>제37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진흥) 시장은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u></p>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독서소외인”이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진흥) 시장은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별표 중 자료복사 및 출력료를 다음과 같이 한다.

### ○ 자료복사 및 출력료

구분	용지규격	1매당 사용료(단면)
복사	A4(210mm×297mm)	50원
	B4(257mm×364mm)	70원
출력	A4(210mm×297mm)	50원
	B4(257mm×364mm)	70원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3.(생   략)</p> <p>4. <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별표] 서울도서관 사용료 등 부과 기준 및 범위(제22조 제3항 관련)</p> <p>○ 자료복사 및 출력료</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용지규격</th> <th>1매당 사용료(단면)</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일반 복사기</td> <td>A4(210mm×297mm)</td> <td>30원</td> </tr> <tr> <td>B4(257mm×364mm)</td> <td>50원</td> </tr> <tr> <td>일반 프린터</td> <td>A4(210mm×297mm)</td> <td>50원</td> </tr> </tbody> </table> <p>○ 회원증 재발급 수수료</p>	구분	용지규격	1매당 사용료(단면)	일반 복사기	A4(210mm×297mm)	30원	B4(257mm×364mm)	50원	일반 프린터	A4(210mm×297mm)	50원	<p>제2조(정의) ----- -----.</p> <p>1.3.(개정안과 같음)</p> <p>4. “독서소외인”이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p> <p><u>제37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진흥) 시장은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의2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u></p> <p>[별표] 서울도서관 사용료 등 부과 기준 및 범위(제22조 제3항 관련)</p> <p>○ 자료복사 및 출력료</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용지규격</th> <th>1매당 사용료(단면)</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복사</td> <td>A4(210mm×297mm)</td> <td>50원</td> </tr> <tr> <td>B4(257mm×364mm)</td> <td>70원</td> </tr> <tr> <td rowspan="2">출력</td> <td>A4(210mm×297mm)</td> <td>50원</td> </tr> <tr> <td>B4(257mm×364mm)</td> <td>70원</td> </tr> </tbody> </table> <p>(현행과 같음)</p>	구분	용지규격	1매당 사용료(단면)	복사	A4(210mm×297mm)	50원	B4(257mm×364mm)	70원	출력	A4(210mm×297mm)	50원	B4(257mm×364mm)	70원
구분	용지규격	1매당 사용료(단면)																							
일반 복사기	A4(210mm×297mm)	30원																							
	B4(257mm×364mm)	50원																							
일반 프린터	A4(210mm×297mm)	50원																							
구분	용지규격	1매당 사용료(단면)																							
복사	A4(210mm×297mm)	50원																							
	B4(257mm×364mm)	70원																							
출력	A4(210mm×297mm)	50원																							
	B4(257mm×364mm)	70원																							